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1992. 12.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년 12월 17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92.12.22)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의사사무국장 이영환)

가. 제안 이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서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예산 규모

- ◇ 총 예산액 : 635,300천원
- ◇ 기정예산액 : 621,957천원
- ◇ 금회추경액 : 13,343천원(2.1%증)
 - 인 건 비 8,703천원
 - 관서운영비 3,341천원
 - 기본경상비 1,299천원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식)

○ 총괄

- ◇ 추경예산내역은 인건비 8,703천원, 관서운영비 3,341천원, 기본경상비 1,299천원으로서 총 13,343천원임.

○ 검토 의견

1992년도 제2회 추경으로 전체 의회비 총예산액은 635,3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1,957천원과 대비하여 13,343천원, 2.15%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의회사무국 승격과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 추가액과 상용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추가 경비, 증원된 직원의 책상, 의자 구입비등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로, 의회운영 부족액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운영위원회 질의 답변 요지서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사무국장 이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리후생비의 유형 설명· 복리후생비가 수당이라는 것인지· 복리후생비란 식비, 피복비 목욕비등 그 내역을 설명 해주기 바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봉급규정에는 본봉 각종 수당등이 있음.· 복리후생비 내역은<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액급식비 : 1인당 월 5만원- 가계보조비 : 6,7급은 9만원씩
이기광 위원장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휴가비 : 연1회씩 5만원 - 연가보상비 : 연 20일중 전체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가 를 안 간 사람중 15일 이내에 계산해서 보상 - 체력단련비 : 본봉의 150% 지급하는 것등이 복리후생비내 포함됨.
최진동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소관중 13,343천원이 기구개편으로 인해 전문 위원 3명, 속기사 1명에 대한 급료가 인건비 8,703 천원인데 몇개월분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 까지 것을 차감하고 부족액 10-12월분중 부속실 결원 분 1명을 공제하고 그 부족 액만 요구한 것임.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6.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